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45호

2020. 5. 18.

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건명 |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략기획실) | | |
| 제안 및 제출자 | 논 산 시 장 | 제안연월일 | 2020. 5. 8. |
| 소관위원회 | 행정자치위원회 | 회부연월일 | 2020. 5. 8. |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4조)
 -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의

□ 검토의견

-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